

## 감리지적사례 FSS/2008-11 : 공사수익 오류

- 쟁점분야 : 공사수익 인식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결정일 : 2016년
- 회계결산일 : 2012.1.1.~2013.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사항을 공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프로젝트별 공사예정원가와 원가집계 내역을 기초로 하여 진행 기준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X2년에 발생한 일부 공사의 계약금액 변경사항을 X3년에 반영하였고, X2년 중 인허가 등의 문제로 중단된 1개 공사에 대해서 진행기준을 계속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계상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시 공사계약금액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X2년 공사수익을 5억원 과대계상하였고, X3년 5억원 과소계상하였으며, 중단된 공사에 대해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금액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X2년 공사수익을 3억원 과대계상하였다.

###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11에 따르면 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 및 공사변경 등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구성되고, 문단 32에서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고 규정하였다.
- ② 회사는 X2년중 일부 공사계약금액 변경이 발생하고 중단된 공사에 대해 상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관련 오류를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전체 공사 중 일부의 공사계약서를 샘플로 추출하여 공사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일정 수준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외부 확인 등은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감사인은 건설사의 신용상태 등의 확인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공사계약 계속 진행가능성을 일부 검토하였으나, 개별공사의 중단 가능성에 대한 확인절차는 소홀히 하였다.

## **5. 시사점**

공사계약금액은 수주산업의 공사수익 결정시 가장 중요한 정보이며,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외부 상황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나 공사의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회사 및 감사인은 이러한 수주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계약 금액 변경이나 공사중단이 발생한 공사에 대해 관련 계약서, 외부 확인 등의 대사 절차를 철저히 하여 공사수익의 금액 및 인식 시점이 적절히 회계처리 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